

CASES

명예훼손 사례

외신 인용한 의료분쟁 기사, 분쟁여부 고지 및 반론보도로 조정성립

A통신사는 외신을 인용하여 영국 유명 안과에서 인공 렌즈를 삽입하는 시력교정술을 받은 환자 6명 가운데 4명에게서 시력저하가 나타났고 호주에서도 피해사례가 발생하여 사용 불가 판정을 받았으며, 수술 후 부작용이 나타난 한 여성은 소송을 통해 보상금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보도에 언급된 렌즈를 국내에 독점수입하는 신청인 업체는, 외신 기사는 현지에서 제조사 및 병원 측과 법률적 분쟁 중이며,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여성과 관련한 소송은 렌즈에 관한 것이 아니고, 언급된 렌즈 수술환자 6명은 수술 환자 전체 수가 아니라며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조정심리 결과, 인용한 외신기사는 법률적 분쟁 중에 있다는 점을 알리고, 보도에 언급된 여성이 보상금을 받은 소송은 렌즈가 아닌 시력교정술에 관한 것이며 유명 안과병원이 당국에 제출한 보고서는 '조사의 필요성이 없음'으로 종결되었다는 점에 대해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기사의 도표 및 로고 사용에도 독자의 시선을 고려한 중재부

B신문사는 방송외주제작사의 실태 및 고충을 보도하면서 지상파방송사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 유형을 도표화하여 보도하였고, 이 과정에서 지상파방송사의 각 로고를 게재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지상파방송사로서 도표에 나열된 문제 유형 중 해당하지 않는 사안이 있다며 정정 및 반론보도를 청구했다.

중재부는 국내 지상파방송사는 소수로 특정되어 있고 도표에 각 방송사의 로고가 게재되어 있으므로, 설령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특정하여 보도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신청인도 해당 문제 유형에 해당한다고 인식할 수 있는바, 기사 내 도표 게재 시에도 신중해야 한다며 피신청인의 주의를 요청했고, 신청인의 입장을 반론보도하는 선에서 합의할 것을 권유했다. 양 당사자는 중재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반론보도 하는 데 합의했다.

아기 사진을 부정적으로 편집 게재한 잡지사, 베스트컷으로 재게재

육아전문지인 C잡지사는 음식을 제대로 씹지 않을 경우 부정교합이 생길 수 있다는 내용의 기사에서 한 아기의 사진을 수정, 얼굴이 부은 것처럼 둥글게 편집하여 게재했다. 이에 대해 아기 아빠인 신청인은 사전에 기사의 취지를 알았고 사진을 게재하는 것에도 동의했으나, 과도한 편집으로 아기 사진이 부정적으로 게재되었다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중재부는 C잡지사가 사전에 아기 엄마에게 아기 사진을 편집하여 게재할 것임을 충분히 설명한 사정 등을 고려해 아기 아빠가 선정한 아기의 베스트컷을 다음 발행호에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간 합의를 유도, 해당 사건은 취하됐다.

초상권침해 사례

동명이인의 사진을 게재, 손해배상 결정

D신문은 세월호 참사에서 학생을 구하고 사망한 교사 최 모 씨가 미 재단으로부터 추모메달을 받았다는 내용을 소개하며 동명이인인 신청인의 사진을 게재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과 관련된 보도라 파급력이 컸고, 이에 대한 신문사의 후속 대처도 미흡했다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5천만 원을 청구했다.

심리결과, 중재부는 고인으로 보도된 신청인의 초상권 침해를 인정했으나 피신청인 측에서 사과문을 포함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였고, 과실에 의한 보도였으므로 7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했다.